

1. 개정이유

「농지법」 개정·시행('22.8.18)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경우에 제출하는 농업인 증명서류에서 농지원부를 제외하고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전문가의 자격기준에서 복수요건 간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지서 및 청구서 서식을 신설하여 국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업인 증명서류 정비(안제10조제2항제1호자목 1), 안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안제15조의3제2항제6호, 별지4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제7호의4서식, 별지제7호의5서식)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농업인 증명서류에서 농지원부를 제외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동일하게 규정함

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관련 전문가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8조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제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구분하여

전문가의 자격요건 관련 복수요건 간 선후관계를 학위나 자격을 취득한 후 종사한 경력으로 명확히 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통지 및 청구서식을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지 및 청구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지서’ 및 ‘환급금 청구서 서식’을 표준화하여 별지로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5항에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제대상 산지가 두 개 이상의 보전산지 사이에 있지 않을 것
2. 해제대상 산지가 보전산지 안에 위치하여 고립된 산지가 아닐 것
3. 해제대상 산지가 보전산지를 단절시키는 등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
4. 그 밖에 보전산지 지정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1)을 삭제하며,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을 “제1호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2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을

“제10조제2항제1호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산림·환경·산지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지한 사람으로서”를 “취득한 후”로 한다.

2. 산림·환경·산지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

환경·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등) ① 관할청은 영 제25조의2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34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각각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5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다목4)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을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3)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을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농지원부 사본 1부”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재해방지시설 설치의견란의 “(전용면적 2ha이상)”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하며, 뒤쪽 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뒤쪽 자목 중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하며, 뒤쪽 1)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뒤쪽 6) 중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자목 중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 바목 중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자목 중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중 “토사처리계획”을 각각 “토석처리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제2호 자목 중 “전원개발사업,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을 “전원개발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등의 신청 시 토석처리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제10조제4항제2호, 제13조제3항제2호, 제15조의2제2항제2호, 제15조의3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석채취허가등의 신청 시 토석처리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석채취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석의 매입 등의 신청 시 토석처리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

34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의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지일시사용 현황

기관명 :

년 월 현재

용도별		합 계(A+B+C)				산지일시사용협의(A)				산지일시사용허가(B)				산지일시사용신고(C)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건수	면적(m ²)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소계	보전	준보전
합 계	금 회																
	누 계																
광 물 의	금 회																
	누 계																
채 굴	금 회																
	누 계																
광해방지 사 업	금 회																
	누 계																
신 재 생 에 너 지 시 설	금 회																
	누 계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금 회																
	누 계																
	풍력 발전 시설																
농림어업용 시 설	금 회																
	누 계																
진 입 로 임도·숲 길 등	금 회																
	누 계																
산림관상 식물재배	금 회																
	누 계																
그 밖의 시 설	금 회																
	누 계																

작성요령

- 조사대상: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산지일시사용 현황
- 작성요령
 - 광물의 채굴: 채굴 및 부속시설 용지
 - 광해방지사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 신재생에너지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 농림어업용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의 시설
 - 진입로, 임도·숲길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로·임도·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숲길·산길 등
 - 산림관상식물재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의 시설: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시설

발급번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납부자	성 명(명칭)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당초부과결정의 고지번호						
환 급 내 역	구 분	당초부과년도	당초부과결정액	기 납부액	변경부과결정액	환급액
	금 액		원	원	원	원
	환급사유					
환 급 대 상	산지의 표시	소재지				
		환급면적 (㎡)				
환급가산금 산출내역						
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 결정액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결 정 일	
		원	원	원	년 월 일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직인

유의사항

1. 통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가 관할청에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청 구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구금액	계	국가 세입	지방자치단체 수입
	원	원	원
결 정 통 지 서	발급번호	통지기관명	
송금계좌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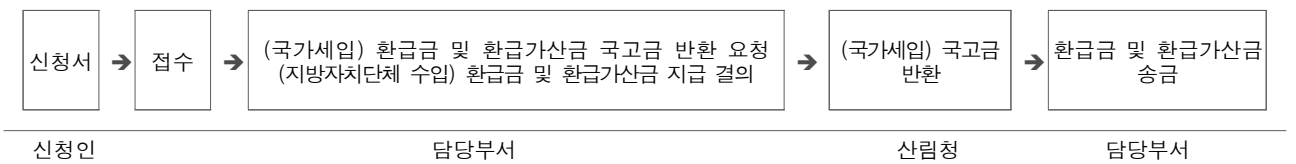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귀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첨부서류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또는 수허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사본 1부 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다.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부 라. 수허가자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6조제5항에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u> 1. <u>해제대상 산지가 두 개 이상의 보전산지 사이에 있지 않을 것</u> 2. <u>해제대상 산지가 보전산지 안에 위치하여 고립된 산지가 아닐 것</u> 3. <u>해제대상 산지가 보전산지를 단절시키는 등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u> 4. <u>그 밖에 보전산지 지정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대나무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 ~ 아. (생략)

자. 신청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2)·3) (생략)

차.·카. (생략)

2. (생략)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1. -----

가. -----

----- 토석처리 계획 -----

나. ~ 아. (현행과 같음)

자. -----

<삭 제>

1)·2) (현행 2) 및 3)과 같음)

차.·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생략)

나.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략)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 5. (생략)

⑤ ~ ⑦ (생략)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② (생략)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호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
----- 토석처리계획 ----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는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 6. (생략)

④·⑤ (생략)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생략)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 5. (생략)

③·④ (생략)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현행과 같음)

2. -----

-- 토사처리계획 -----

3.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토사처리계획 -----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나 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 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0조제1호자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서류 ----- ----- -----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 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 ----- ----- 토석처리계획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 차 및 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 차 및 기준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영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④ ----- ----- -----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신설>

2. 산림·환경·산지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⑤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산림·환경·산지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취득한 후 -----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등) ① 관할청은 영 제25조의2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대
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
급가산금청구서를 관할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①

1. -----

--- 토석처리계획-----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 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 제 3. ~ 12. (생 략) ② ~ ⑨ (생 략)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 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 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 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2. (생 략) 제34조(토석의 매입·무상양여 신 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 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 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 ----- ----- -- 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 ----- ----- ----- ----- ----- ----- ----- -----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 (현행과 같음) 제34조(토석의 매입·무상양여 신 청) ----- ----- ----- -----
--	---

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 재에 한정한다), <u>토사처리 계획</u>(석재에 한정한다), 연 차별 생산·이용계획, 연 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 ----- ----- <u>토석처리계 획</u>----- ----- ----- ----- -----
나. ~ 마. (생략)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절차 등) ①·② (생략) ③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 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 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 야 한다. 1. ~ 4. (생략) 5. 「<u>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 에 관한 법률</u>」 제39조제1항 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 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 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④ ~ ⑥ (생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한국광해광업공단법</u>」 제8 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 해광업공단----- ----- ----- ----- ④ ~ ⑥ (현행과 같음)